

##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부속 벽강아트센터(이하 “아트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과 대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무 및 운영)** ① 아트센터의 대관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관한 사항은 사무처에서,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

② 기타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대관신청 및 허가)** ① 아트센터 시설의 이용은 [별표1]의 ‘대관신청서’(공연의 경우 [별표2]의 ‘공연계획서’ 포함)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‘사용변경신청서’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대관인은 행사준비 및 철수 일정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이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 한다.

③ 대관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제공한다.

**제4조(대관신청의 제한)** 총장은 경운대학교 교육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,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에 위반되는 공연, 전시 및 일반 행사에 대한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5조(대관료 징수 및 관리)** ① 대관료 금액과 징수는 [별표3]에 따르며, 대관인은 계약 체결시 대관료의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행사 직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하는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 및 전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1주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에는 주1회(월요일)를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로 점검일을 대치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관료의 감면)** ① 입학식, 졸업식 등 교내 행사의 경우 총장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공익성,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도 등,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7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## [별표3]

## 1. 공연대관료

구분		순수예술	뮤지컬	대중음악 대중공연
공연 / 1회당 대관료		1,000,000	1,500,000	2,000,000
연습 준비 철수	오전	500,000	700,000	1,000,000
	오후	500,000	700,000	1,000,000
	야간	700,000	1,000,000	1,500,000
	심야	1,500,000	2,100,000	3,000,000
	새벽	1,500,000	2,100,000	3,000,000

## 2. 일반행사 대관료

구분	대관료	비고
3시간 이내(식전행사 포함)	1,000,000	
6시간 이내(식전행사 포함)	2,000,000	

※ 냉난방비 포함